



영상 단속에 대한 방문 청문회 설명

이 정보 자료는 귀하 차량에 대해 발부된 영상 단속 티켓에 관한 청문회에서 준수해야 할 청문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 시간을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심사관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귀하의 증언이 진실임을 맹세하거나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귀하의 성명과 주소를 말하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관이 티켓에 포함된 정보와 정부가 주장하는 영상 단속 위반 내용을 읽고 기록하도록 합니다.

귀하에게 정부의 고발 내용에 답변하도록 요구합니다. 허용되는 답변 또는 항변은 인정(admit), 설명을 전제로 인정(admit with explanation) 또는 부인(deny)입니다. 인정으로 답변할 경우 위반한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며 벌금과 모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을 전제로 인정할 경우 귀하가 위반한 사실에 동의하며 단지 벌금/과태료의 금액에 대응할 증언만 제시합니다. 위반을 부인할 경우 귀하가 검토하도록 정부의 증거가 제시됩니다.

정부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위반 내용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별구 사건은 위반 통지서에 포함된 정보와 제출한 기타 증거로 구성됩니다.

청문회 연기가 허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방어 내용을 입증할 모든 증거와 서류(예: 차량 등록증, 사진 등)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은 청문회 종료 시점에 내립니다. 귀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30 일 이내에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청문회 기록의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청문회 결과로서 받는 유일한 서면 통지서입니다.

귀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청문회로부터 30 일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 귀하의 요구서가 DMV 에 30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청구서는 DMV 웹사이트 dmv.dc.gov로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심사 서비스국으로 발송해야 하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ttn: Reconsideration, PO Box 37135, Washington, DC 20013.

영상 단속에 대한 방문 청문회 절차에 관한 이 설명을 읽은 후에 아래에 서명하고 성명과 주소를 기입한 후 호출 시 청문회 서기에게 제시하십시오.

성명 (인쇄체)	주소	일자
서명		

본 신청서에 허위 이름 또는 주소를 기입하거나 알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DC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1,000 달러 이상의 벌금, 180 일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D.C. 법률 §22-2405).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dmv.dc.gov 를 참고하거나 DC 시내 전화 311 번 또는 202-737-4404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DC 정부당국이나 공무원의 낭비, 부당행위, 남용행위를 보고하려면 DC 감찰국(Office of the DC Inspector General) 전화 1-800-521-1639 번으로 연락 주십시오.